

##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규정

제정 2019.10.28.

개정 2022.02.21.

개정 2023.08.21.

개정 2026.02.09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과정(또는 프로그램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과정(이하 ‘비정규 교육과정’)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, 대학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교과 형태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.

② 운영부서란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내 스쿨 및 부서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 및 대상)** ① 비정규 교육과정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비정규 교육과정은 우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스쿨 및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4조(운영)** ① 비정규 교육과정은 운영부서에 소속 혹은 참여하는 학생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,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비정규 교육과정 계획에 관한 사항
2.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비정규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비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

② 비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은 운영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야 이수가 가능하다.

③ 비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리대학 재학생은 관련 규정 또는 교육과정 편성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 교육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이 경우, 정규 학점 내 인정 가능한 교과목으로 승인되어야 하며, 강의계획서 등에서 정한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)** ① 비정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정규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비정규 교육과정 기본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성과 및 환류에 관한 사항
3. 기타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6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7조(부칙)**

이 규정은 2019.10.28.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2.02.21.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.09.19.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6.02.26.일부터 시행한다.